

예술대학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에서 예술대학장에게 위임한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의 교수, 연구와 유학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적 인재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제 2 장 편 제

제 1 절 교육조직

제3조(학사조직 및 학위과정) ①「학칙」 제5조에 의하여 본 대학에 설치된 학사조직 및 각 학사조직에 설치된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과정

- 가. 미술학과 : 학사과정
- 나. 디자인학과 : 학사과정
- 다. 무용학과 : 학사과정
- 라. 영상학과 : 학사과정
- 마. 연기예술학과 : 학사과정
- 바. 의상학과 : 학사과정

2. 일반대학원

- 가. 미술학과 : 석사과정
- 나. 디자인학과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다. 무용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라. 영상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마. 연기예술학과 : 석사과정
- 바. 의상학과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사. 예술학협동과정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아. 융합정보디자인학과 : 석사과정

3. 특수대학원(2021.02.28. 폐지)

- 가. 디자인대학원 : 석사과정

제4조(학장 등) ①「학칙」 제7조에 의하여 본 대학을 대표하고, 교육조직, 행정조직 및 부설

(원) 취득학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성적을 반영한다.

②학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외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학사과정

제 1 절 졸업평가

제8조(졸업평가) ①학칙 제40조에 의거한 본 대학의 학사과정 학과별 졸업평가 실시여부 및 유형은 별표3과 같다.

②학과별 졸업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 학년도마다 학과장이 정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년도 개시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연구논문) ①졸업평가 형태가 연구논문인 학과의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지정된 규격·양식 등에 맞춰 작성한 연구논문을 지정된 기한까지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과장은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별 연구논문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 후 소정기간 기한까지 그 결과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논문 심사는 각 심사위원은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제8조의3(실기발표) ①졸업논문 형태가 실기발표인 학과의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형식에 맞춰 작품을 준비하고 지정된 일정에 심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학과장은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실기발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 후 소정기간 기한까지 그 결과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기발표 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제 2 절 장 학

제9조(장학금 정의) 장학금이라 함은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의하여 대학 운영위원회에 선발이 위임된 성적우수장학금과 교외 장학재단에서 학교에 추천대상 을 요청하여 학장에게 선발이 위임된 장학금을 말한다.

제10조(선발기준) ①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해당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별도의 선발기준이 있는 장학금은 이를 우선순위에 둔다.

②동점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의 선발기준을 상회하는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중 이수학점이 많은 자
3. 직전학기 제1전공성적 이수학점이 많은 자 중 제1전공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중 이수학점이 많은 자

제11조(성적우수장학금) ①성적우수장학금은 학과별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자에게 학장이 지급한다.

②학과장은 장학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학년별 인원 및 대상자를 지정하여 추천한다.

제12조(교외 장학재단장학금) ①본 대학의 교외 장학재단장학금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학기 재학생 중 학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교외 장학재단 지정 기준 적용
2. 장학 선발기준 및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우수한 학생 선발
3. 기타 학장이 교육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거나, 학교 및 대학의 명예를 드높여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5 장 일반대학원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13조(학점의이수) ①2016학번 이후 신.편입학한 자 중 학위논문 작성을 희망하는 자는 수료 전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학과에서 정한 학점과 이수구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과정 수료가 제한된다.

②2020학번이후 대학원 학위논문작성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학위논문심사신청이 제한된다.

제 2 절 박사학위과정의 전공

제14조(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설치된 학과의 전공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전공운영) ①전공명칭은 학과의 의견을 들어 학과학사관리위원회 및 예술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확정한다.

제 3 절 선수학점

제16조(선수학점) ①입학이전 학생이 이수한 교육과정에 비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과장은 선수학점을 부과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선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200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학자는 입학당시 부과 받은 선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의2(외국어과목)에 관한 사항은 201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디자인대학원 폐지(2021.02.28.) 이후 잔존 학생은 폐지 전 특수대학원 규정(제6장)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연구소 명칭 변경의 건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학사과정 학과별 졸업평가 유형

학과	제출 방법
미술학과	실기발표
디자인학과	실기발표
무용학과	실기발표
영상학과	실기발표
연기예술학과	실기발표와 지정과목 이수 병행
의상학과	실기발표

(별표 4) 특수대학원 학과 및 전공

대학원	학 과	전 공
디자인대학원 (2021.02.28. 폐지)	디자인학과	패션학전공, 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환경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전공

